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5345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 30.
판 결 선 고	2020. 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8.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2. 금형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redacted]시 B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본점 소재지가 2005. 3. 22. [redacted]시 C로 변경되었다].

나.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개발회사'라 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인 E 조성사업(2014년부터 2017년까지 [redacted]구 F 일대에 산업시설구역 등 합계 524,910㎡를 조성·분양하는 사업이다. 이하 '이 사건 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2013. 7.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가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조성사업의 시행자이다.

다. 이 사건 개발회사는 2015. 12. 8. E 내 산업시설용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공고(이하 '이 사건 분양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 입주 및 분양 대상용지 목록 및 분양가격
 - 대상용지: G롯트 9,900㎡
 - 대상업종: 복합업종(중소기업)
 - 공급가격: 11,386,584,000원
- 신청자격
 - 중소기업 전용단지: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내 운영 중인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3장 제5절 (5) 참고]
- 입주신청
 - 공고된 기간 내에 [redacted]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E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및 열람 자료를 참조하여 입주계약 신청서 및 제출서류(제본 포함)를 E 분양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 신청 시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및 제시하여야 합니다. (전자 및 우편접수 불가)
 - 입주 및 분양계약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미비 및 작성오류(제본 포함) 등으로 인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입주대상자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산업시설용지 입주대상자 결정
 - 입주대상자 결정은 업종별, 필지별로 신청 접수를 받은 후 당사의 입주대상자선정 평가표[서식04]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E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40점 이상의 업체를 적격대상자로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서 생략)
- 중소기업 전용용지 입주대상자 결정
 - 중소기업 전용용지는 산업시설용지 입주자격을 갖춘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자를 포함하며, 2010. 2. 6. 이전에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에 한하여 우선 입주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전용필지에 입주를 신청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식03]의 사실확인서(공장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상자 선정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하여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E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기타 다른 사항은 일반 상업시설용지 입주대상자 결정방법의 1)부터 4)까지를 적용합니다.
- 공급일정
 - 입주 신청: 2015. 12. 14. ~ 2015. 12. 24.
 - 입주 심의: 2015. 12. 15. ~ 2015. 12. 28.
 - 입주대상자 선정: 2015. 12. 29.
 - 용지 매매계약 체결: 2015. 12. 30.
- 분양제출서류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입주대상자 선정평가표의 확인서류에 해당되는 모든 항목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입주신청마감일 18시까지만 접수하며, 서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미제출 및 작성요령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분양 및 입주계약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미비 및 작성오류(제본 포함) 등으로 인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접수 전 제출서류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목록
 - 분양신청서[서식01] 1부
 - 입주(계약)신청서[서식02] 3부
 - 중소기업 전용용지 입주신청자는 위의 서류 외 사실확인서(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날인)[서식03] 5부
 - 입주대상자 선정평가표[서식04] 5부
 - 위임장[서식11] (해당자에 한함) 1부
 - ※ 대리신청자는 위임장[서식11] 및 법인인감증명(개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작성방법

- 제출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합니다.

라. 원고는 2015. 12. 23. 중소기업 전용용지인 G롯트 9,9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양받기 위하여 직원인 H을 통하여 이 사건 개발회사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신청서, 입주(계약)신청서 등 이 사건 분양공고에서 정한 서류들을 제출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의 3)를 제출하면서 확인자 란에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redacted]시장의 날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고, H에 대한 위임장(갑 제4호증의 11)을 제출하면서 위임자 란에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였다.

마.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 E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2015. 12. 28.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위임장에 위와 같은 흠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입주대상자 부적격 판정(이하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바. 원고는 2017. 1. 6.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 신청을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7. 3. 6. 위 사실확인서의 흠은 [redacted]시장이 2015.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보완되었고, 위 위임장의 흠은 원고의 분양신청 의사가 분명한 만큼 단순한 착오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입주대상자 자격을 다시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견표명을 하였다.

사. 그 후 원고는 심의위원회에서 입주대상자 적격 판정을 받고, 2017. 3. 22. 이 사건 개발회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11,386,58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갑 제14호증)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7. 12. 28.까지 위 분양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아. 원고는 2018. 2. 28.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4항의 취득세 50% 경감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 229,145,430원, 농어촌특별세 57,286,350원, 지방교육세 22,914,54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자. 원고는 2018.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이 없었더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25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2015.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부칙조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을 적용하여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를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차. 피고는 2018.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2015.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부칙조항에는 2015. 12. 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 6, 7, 13 내지 15, 18 내지 20,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5. 12.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신청을 하면서 [redacted]시장의 날인을 받지 않은 사실확인서와 위임자 란에 원고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지 않은 위임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redacted]시장이 분양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인 2015. 12. 24. 피고에게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안의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사실확인서의 위와 같은 흠은 치유된 것이고,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원고의 법인인감도장 날인이 누락된 것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사소한 흠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형식적 흠을 이유로 한 심의위원회의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은 위법하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조성사업의 관리권자로서 위법한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을 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2015.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부적격 판정을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이처럼 원고가 2015. 12. 31.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① 이 사건 부칙조항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전부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분양신청자가 사업시행자와 2015. 12. 31.까지 분양계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을 체결하지 못한 데에 분양신청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14. 12. 31. 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전부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면서 취득세를 50%만 경감하도록 규정하여 기존의 혜택을 감축하였는데, 이 사건 부칙조항은 위와 같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일시에 축소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혜택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취지인 점, ③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17. 3.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이 2015. 12. 31. 이전에 체결된 분양계약과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고 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단서 생략)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 12. 31. 법률 제1295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 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6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의2. "산업시설용지"란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연구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를 말한다.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 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